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396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

장규권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,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(안 제5조 및 안 제7조)

라.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육·홍보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마.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
(안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3. 9. 6. ~ 2023. 9. 1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이상동기 범죄”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로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.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
3.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4.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신고체계의 마련)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)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2.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
3.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·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
4.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
5.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
6.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
7.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)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)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

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